

기자회견 보도자료

[하이디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배청구 기각하라

○ 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11일 오전11시,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하이디스지회 손배소 재판진행 경과발표 ----- 조현주 변호사

연대발언 ----- 각계 대표자

종교계 / 최현국 목사(예수살기)

양한웅(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시민사회 / 이승훈(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인권단체 의견서 발표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

노동현장 입장문 발표 ----- 참석 노동현장 대표노동

하이디스지회 발언 ----- 이상목 지회장

*목록(페이지)

첨부1. 기자회견문(p.5)

첨부2. 인권단체 의견서(p.7)

첨부3. 노동현장 입장문(p.12)

첨부4. 2심 기각 청원 자필 탄원서(p.14)

첨부5. 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투쟁경과자료(p.16)

*문의

기자회견 문의: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hydisunion@gmail.com)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sonjabgo47@gmail.com)

인권단체의견서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humanrights@sarangbang.or.kr)

기자회견 배경, 취지

1. 2015년 배재형 열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에 대해 하이디스 측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형사소송한 건은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됨.
 - : 같은 혐의로 4억 원 손해배상청구한 건은 1심에서 3천만원 배상 선고를 받고 2018년 1월 19일(금) 2심 선고기일이 잡힘
2. 기자회견에서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의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의사표현행위 자체를 막아 표현의 자유 행사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하이디스지회의 2015년의 ‘열사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노동3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이기도 합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회장 개인의 발언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정작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사에는 어떠한 의견 피력도 없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기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기자회견을 연 지회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2017년 10월 9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민형사상처벌에 대해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해당 손배소 1심 판결을 규탄하고, 2심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선고를 앞둔 1월 11일(목),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합니다.
6. 본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제출할 인권단체 의견서, 시민 자필 탄원서 취합 결과, 투쟁사업장 규탄 입장문, 기자회견문 등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후 인권단체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하이디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배청구 기각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노동조합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노사관계에서 쟁의는 노동자 권리행사의 주요 수단이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인데, 권리행사의 주체가 노동자일 경우 유독 ‘불법’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현실이다. 심지어 기자회견에서의 의사표현행위마저 민형사상소송을 통해 가로막히고 있다.

2003년 배달호열사 이후 많은 노동열사들이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알리며 산화했지만, 십수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노조파괴시나리오에 의해 노동탄압이 자본의 기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파업 뿐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 피켓시위 문구, 소식지 내용 등 노동조합활동 전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같은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에 국제사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민형사상처벌에 대해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하이디스지회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악화일로를 걷는 우리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다. 특히 2015년의 ‘열사 기자회견’을 두고 제기한 하이디스의 명예훼손 손배소송은 국제사회가 지적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자 ‘괴롭히기 소송’에 부합한다.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재판에서 열사 기자회견과 이상목 지회장의 발언이 기사화된 것을 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상목 지회장 한 사람만을 지목해 형사고발과 4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손배소에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사측의 책임을 배제함으로써 균형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회장과 조합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대표이사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정리해고를

두고 노사교섭 중이었다는 점, 조합원들이 노동절 휴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소송 위협을 받던 상황이라는 점과 노조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열사투쟁과 기자회견에서 모든 과정과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다. 대표이사-노조지회장과의 3자회담을 뒤로 사라진 배재형 열사는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고, ‘5/1 제가 다 했다’, ‘책임을 느낀다’, ‘꼭 싸워서 이겨라’, ‘악질자본 없는 세상으로 간다’ 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열사의 유서를 받은 노조가 죽음을 알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노동조합의 결정이다. 노조를 대표하는 지회장의 책임은 노조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이디스 노사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사측에 있다. 하이디스는 일방적 정리해고를 하고도 교섭은 뒤로한 채 민형사상소송 위협을 앞세워 ‘희망퇴직’ 으로 정리해고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같은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사측의 태도가 1000일이 넘는 기간동안 노동자와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사측은 또 다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명예를 운운하며 ‘민형사상소송’ 을 남발하고 있다. 하이디스와 전인수 대표이사의 명예는 교섭에 임하지 않은채 소송을 남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자신이 훼손한 것이다.

하이디스에 요구한다. 이번 손배사건을 비롯해 노조에 제기한 26억원의 손배청구 소송과 3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노사관계의 문제든 하이디스의 명예회복이든 ‘보복조치’ 로 남발한 소송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진정 사태를 수습하고 명예를 되찾길 원한다면 즉각 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

2심 재판부에 요청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하이디스와 전인수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길 바란다. 재판부는 과도한 소송을 바로잡고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결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 이제는 우리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2018년 1월 11일
기자회견참석 일동

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故)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정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물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 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중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년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

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중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하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년 판결, 97다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하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중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¹⁾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²⁾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³⁾

1) A/HRC/4/27, para 47. 또한, A/HRC/14/23 (para. 82-83), A/HRC/14/23/Add.2, A/HRC/7/14 (para. 39-43), E/CN4/2006/55 (paras 44-55), E/CN. 4/2001/64 (paras 43-48), E/CN 4/2000/63 (paras 45-52), E/CN4/1999/64 (paras 24-28) 참조

2) 각주 2)에 진술된 내용

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월 10일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연명 (전국 총 33개 인권단체)

3) 각주 2)에 진술된 내용

첨부 3. 노동현장 입장문

[하이디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선고 기각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입장문] 열사 기자회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반드시 기각하라

15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분신 사망했다. 그의 유서에 적힌 해고의 고통, 손배가압류의 처절함, 악랄한 자본에 대한 한탄과 절규를 우리는 아직 기억한다. 또한 잊을 수 없다.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알리고자했던 정리해고의 아픔도, 손배가압류의 고통도, 자본의 악랄함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하이디스지회는 2015년 배재형 열사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전인수)가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에게 청구한 4억원의 손해배상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7년 5월 18일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열사의 죽음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 열사의 죽음과 의혹을 알리고, 사측에 책임과 진상을 묻는 일은 동지로서, 노조를 이끄는 지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열사 기자회견에서 지회장으로서 아픔과 슬픔을 토로한 것은 지회장이기에, 십수년 함께 일터를 다닌 동료이기에, 또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울분의 표현이었다.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 또 4억원이라는 해고노동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동지를 잃은 노동자마저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유서의 내용에 대해 이상목 지회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도, 재판부 역시 유서를 두고 사측의 자의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냈다.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교섭기간 동안 발생했다. 노사 교섭 기간에 대표이사 전인수가 전 지회장인 배재형 열사를 중재 대상으로 삼아 중재를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도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재 내용에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민형사상소송’ 위협이 있다면 더욱 심적 괴로움이 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형사상소송이 열사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사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노동조합활동과 노조구성원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또한 배재형 열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과 다름없다.

지회장까지 역임했던 배재형 열사가 민형사상소송 위협이 십수년 함께한 동료들을 향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열사에게 소송위협이 조건으로 붙는 중재까지 요구됐다면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는 게 당연하다. 유서에 적힌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쟁했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놈입니다. 제 잘못으로 조직 전체가 힘들어하고 청정동지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에서 우리는 배재형 열사의 심리적 고통을 읽었다.

재판부는 열사의 유서에서 하이드스와 대표이사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서에 적힌 “동지들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에서 우리는 다른 열사들의 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본에 대한 규탄을 읽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민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악랄한 자본의 욕심 앞에 노동자는 ‘정리할 대상’으로 취급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어디 단 하루도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있던가. 하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를 되려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된 지 오래다. 노동3권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 그래서 형사처벌도 모자라 수십-수백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의 생존을 옥죄는 것이 이제는 노조파괴 수준이 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 딱지를 붙여 마땅한 노동자의 ‘면책권’ 조차 빼앗아가는 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법도 정의로운가. 기자회견 역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노동자의 기자회견은 다르다고 할텐가. 민사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답할 차례다.

2003년 배달호 열사 이후 해고와 노동탄압의 고통과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며 많은 열사들이 스러져갔다. 우리는 2015년 배재형 열사의 죽음역시 악질자본에 맞서고, 민형사상 소송이라는 위협에 저항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악질자본 없는 세상,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에 저항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다.

2018. 1. 11.

노동현장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쌍용자동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시그네틱스분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 콜트.콜텍지회, 파인텍지회, 풍산마이크로텍지회, 하이드스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투쟁위원회, 한진중공업지회, KEC지회),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본부 경북대학병원분회,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본부 삼표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노조 울산과학대학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첨부 4. 2심 기각을 위한 탄원서

*탄원서 서명기간 : 2018년 1월 3일~1월 9일(총 7일)

*탄원서 참여인원 : 총 5,049명 탄원서 자필서명 참여

탄 원 서

사 건 2017나2030420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의 소
원 고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이상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별지 목록 기재 탄원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가족의 집과 생계비가 담긴 통장마저 압류당해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끝내 목숨을 잃도록 내몰리는 일들이 지난 2003년 이후 너무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보낸 권고문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압류 등 민형사상처벌에 대해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자회견에서의 의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의사표현행위 자체를 막아 표현의 자유 행사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지목된 2015년의 ‘열사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2015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배재형 전 하이디스지회장은 ‘제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다 주동했고 선동했고 5/1 일에 제가 다 했습니다. 동지들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라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동료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전 지회장의 죽음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지회장 이상목이 아픔과 슬픔을 토로한 것은 지회장이기에, 십수년 함께 일터를 다닌 동료이기에, 또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울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 또 4억원이라는 해고노동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동료를 잃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입니다.

재판장님, 하이디스지회와 조합원들은 하이디스지회와 조합원들은 노사대화를 끌어내고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 하이디스 사가 두 번이나 외국회사에 매각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으며, 급기야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모회사 경영진과 최소한의 대화를 하고자 했지만 결국 하이디스 사측도, 대만 모회사 이잉크 사도 노사협의를 거부했습니다. 대화 시도조차 가로막힌 노동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장님, 최근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92사건)에서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재판을 계속하며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목 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1000일이라는 긴 정리해고로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책임자의 입장에 선 이상목 지회장이 도저히 별지도 갚지도 못하는 금액을 그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울분을 표했다'는 이유로 청구 받게 된다면 그것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넘어 살아갈 의지마저 앗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 . . .

탄원인 일동

번호	이름	주소(동까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나) 귀중

하이디스지회 상황 개요

1. 공장폐쇄 정리해고 단행

- 2015년 1월 7일 하이디스는 급작스럽게 사내전산망에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발표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전 통지 및 관련 협의 참여 요청”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이하 “지회”)에 통보
- 2015년 1월 9일. 하이디스는 지회에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및 사용자측 위원 통보의 건”을 통보.
- 2015년 1월 29일, 2월 9일, 2월 25일. 하이디스는 지회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3회에 걸쳐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함.
- 2015년 2월 27일. 하이디스는 당시 377명의 노동자 중 임의적으로 정한 정리해고 제외자 42명과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들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에 대하여 2015년 3월 31일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통보 함.
- 2015년 3월 31일. 하이디스는 당일 자정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희망퇴직을 미신청 인원 82명을 정리해고 함.
- 2015년 4월 14일. 하이디스는 희망퇴직자 3명을 반려하고 출근을 통보하고, 정리해고자 중 3명에게 2015년 4월 20일자로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통보를 함.
- 최종 정리해고 인원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79명 임. 시설관리직원 30명과 특허관리 2명을 포함한 32명은 필수인력이라며 정규직으로 잔류. 2015년 4월 1일부로 임원, 총무, 인사, 회계업무자 계약직으로 재 채용.
- 2015년 4월 25일~4월 31일까지 필수인력 및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상향 재공고 하였으나 희망퇴직자 없음.
- 2016년 1월 31일. 시설관리에 업무 중이던 인원 중 희망퇴직을 거부한 15명을 정리해고 함. 일부인원 희망퇴직 후 아웃소싱업체로 전환하여 동일 업무 수행 중.
- 2014년 12월말 377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아웃소싱, 정리해고로 2017년 5월 현재 정리해고자 73명

투쟁 중

2. 현재까지 상황

- 하이디스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함께 국내에서 TFT-LCD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서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갖춘 회사임.
- 이 기술력 때문에 2002년 중국, 2008년에 대만 E-ink에 매각되면서 기술 먹튀의 먹잇감으로 전락 됨.
- 하이디스의 현재 대주주인 대만 E-ink는 2014년 840억 원의 당기 순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이디스 경영진도 납득 할 수 없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2015년 3월 정리해고를 함.
- 투쟁과정 중 비해고자인 배재형 열사가 2015년 5월 자결한 채 시신으로 발견됨.
- 2015년 5월~7월 대만원정투쟁을 비롯한 열사투쟁 진행 및 열사장례문제 합의.
- 2015년 7월 배재형 열사 장례이후 노조는 교섭을 통해 대만 영풍그룹 소속의 E-Ink사가 공장정상화를 통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려면 특허를 포함하여 일괄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함.
- 사측에서 고용보장안이라며 대만이나 중국에서 각 연봉 1천만원, 6백만원 받고 재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안을 제출함.
- 2016년 2월 대만원정투쟁 준비 중 대만노동부와 대만연대단체, 대만 영풍위와 이잉크 관계자가 간담회를 진행 후 이잉크 관계자가 한국 방문 시 하이디스 노조를 만나기로 함.
- 2016년 3월 4일 하이디스지회는 하이디스 이사회 멤버 겸 대만 이잉크 CFO인 로이드 첸과 이잉크 자문 변호사인 수잔, 하이디스 전인수 대표이사, 정관욱 상무 면담을 통해 2주마다 동일 인원이 참석하는 교섭을 열기로 합의함.
- 2016년 9월 1일까지 10번의 교섭을 통해 공장 부분매각을 통한 해고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담보하는 방안을 합의 후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 함.
- 10차례의 교섭 이후 더 이상의 진전 없이 교섭은 잠정 중단.
- 11월 18일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형사 재판 선고가 있었으며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이다.

- 11월 26일~12월 11일 대만 5차 원정 진행
- 5차 원정 이후 12월 13일 김종훈 의원실에서 특별교섭을 진행. 사측은 공장 재가동이나 매각을 제외한 금전적 합의만을 위한 교섭을 주장함. 교섭은 성과 없이 결렬.
- 2017년 6월 16일 해고무효소송 1심 선고[해고무효 판결]진행. 하이디스 지회 승소함.
- 2017년 8월 11일 1차 해고자 행정소송에서 하이디스 지회 패소함.
- 2017년 8월 23일 1차 교섭 ~ 9월 26일 9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
- 하이디스 사측은 고용이 아닌 보상으로 접근, 지회는 고용을 요구
- 2017년 10월 30일, 11월 7일 2회에 걸쳐 하이디스 사측은 특별교섭 재개 공문 지회에 발송 → 고용이 아닌 합의금으로 교섭하자는 내용. 하이디스 지회 보상이 아닌 어떠한 사한에 대해서 교섭할 의향이 있다는 회신공문 보냄.
- 2017년 11월 2일 청와대 노숙농성 기자회견 진행 후 노숙농성 돌입함.
- 2017년 11월 28일 1차 해고자 2심 1차 조정 진행(판사 제안), 양방 간에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중간에서 조정의 역할만 하겠다. 라는 취지로 판사가 제안후 진행함. 추가 12월 19일 16시 2차 조정 진행.

3. 맺음말

- 하이디스는 2014년 840여 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이다. 만일 하이디스 정리해고의 당위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거나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 없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제조업체에서 정리해고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업장은 결단코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 아울러, 하이디스 공장폐쇄, 정리해고, 기술유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대형 로펌들이 외투 자본의 길잡이로서 자국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외투자본의 횡포에 이 땅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 하이디스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흑자 정리해고, 무분별한 외투기업 유치, 국내 기술 유출, 국내 일자리 파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보전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 해야 한다.

하이디스지회 투쟁 경과

-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 2003년 1월 21일 중국 BOE 그룹에 매각
- 2006년 9월 법정관리(2년)
- 2008년
 - BOE 기술유출 관련 검찰 조사(2005년부터는 4천여 건의 기술 유출), 기술유출 관련 회장 및 개발센터장 집행유예
 - 대만 PVI(현 EIH) 인수
- 2013년 5월
 - 400여명 희망퇴직으로 퇴사
- 2015년 1월
 - 1월 7일 공장폐쇄, 정리해고 예고 통보
 - 1월 29일 희망퇴직 공고 및 정리해고 통지
- 2015년 2월
 - 2월 8일~12일 대만 1차 원정투쟁 (6명)
- 2015년 3월
 - 3월 17일(화) 3시 30분 대만영사관 기자회견(항의서한 전달)
 - 3월 18일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 3월 22일~27일 대만 2차 원정투쟁(29명)
 - 3월 25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면담
 - 3월 30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에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 정리해고에 관한 건의문을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
 - 3월 31일 총원 377명중 희망퇴직 271명, 정리해고 82명 잔류 24명
 -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3월 31일 자로 농성돌입(109명)
 - 교섭과 투쟁을 통해 해고자 하이디스 건물 출입을 보장받음
- 2015년 4월

- 4월 1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기자회견
-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면담
- 4월 29일 경기도 부지사 현장방문

- 2015년 5월
 - 5월 11일 배재형 열사 돌아가심
 - 5월 25일 3차 대만원정 투쟁 (11명)
 - 5월 27일 대만영사관 앞 상경노숙투쟁 시작
- 2015년 6월
 - 6월 10일 3차 대만원정단 강제 추방
 - 6월 26일~8월 23일 4차 대만 릴레이 원정투쟁
 - 6월 30일 배재형 열사 장례문제 잠정합의

- 2015년 7월
 - 7월 1일 배재형 열사 장례문제 본 합의
 - 7월 3일 배재형 열사 장례식
 - 7월 7일 시사기획 창 하이디스 문제 방송
 - 7월 23일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및 기자회견
 - 7월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신청 기각

- 2015년 8월
 - 8월 18일 조합원 심리치료 시설 지원 요청을 위한 이천시장 면담
 - 8월 23일 대만 4차 원정 투쟁 마무리
 - 8월 26일 영월암 보문주지스님 간담회

- 2015년 9월
 - 9월 3일 하이디스 문제해결 촉구 정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9월 3일 타이페이 노동국 국장 광화문 농성장 지지방문
 - 9월 9일 한.대만 민간경제 교류 회의관련 전경련 회관 피켓시위
 - 9월 22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면담

- 2015년 10월
 - 10월 14일 정리해고 200일 문화제 (광화문 농성장)
 - 10월 22~24일 아시아 다국적 네트워크 회의(태국) 참석, 하이디스 투쟁 발제
 - 10월 23~24일 아사히, 동양시멘트, 하이디스, 하이텍 코리아 등 투쟁사업장 1박 2일 공동 투쟁
 - 10월 27일 장비 매각을 위한 업체 공장 투어 진행
 - 10월 28일 하이디스 장비매각 금지관련 기자회견
(이천 하이닉스 정문)

- 10월 28일 사측 '설비팀 아웃소싱' 요청 공문

● 2015년 11월

- 11월 12일 대만 연대단체와 경기도 본부 자매결연 협약
- 11월 13일 해고 무효 소송 변론 (민사소송, 수원지법)
- 11월 16일 아웃소싱 관련 사측 설명회 시도
- 11월 19일 아웃소싱 관련 2차 사측 설명회 시도
- 11월 23~25일 조계종 노동위원회 주최 템플스테이 참석 및 조합원 단합대회
- 11월 27일 중노위 심판회의: 기각

● 2015년 12월

- 12월 4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설비부분 비해고자 29명 전원 대상)
- 12월 14일~12월 20일 설비부분 조합원 29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실시
- 12월 14일~12월 24일 정리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추가 실시
- 12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하이디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 통보: 기각
- 12월 30일 정리해고자 지회 사무실 및 기숙사 퇴거 통보
- 12월 30일 지회 사무실 및 기숙사 퇴거 관련 항의 집회
- 12월 31일 해고자 14명 희망퇴직

● 2016년 1월

- 1월 4일 이천시내 지회 거점으로 출근시작
- 1월 5일 조합원 4명 사측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은행 계좌 가압류 됨
- 1월 6일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하이디스 부당해고 판결 촉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앞)
- 1월 7일 공장폐쇄 1년 지역 대책위 기자회견
- 1월 31일 설비부분 조합원 15명 정리해고
(12명 희망퇴직, 2명 정규직 잔류)

● 2016년 2월

- 2월 1일 해고자 공장 출입 관련 하이닉스 정문 앞 집회 (해고자 공장출입 불허)
- 2월 18일 대만 노동부의 중재로 대만연대동지들과 이잉크 접촉
- 2월 18일 34차 임금교섭 진행
: 대표이사 불참, 사측 임금 동결
- 2월 19일 지회장 명예훼손 및 공동주거침입 공판
(전인수 사장 증인 출석)
- 2월 22일 대만연대단체 면담 결과 이잉크에서 하이디스 노조 만나겠다고 통보
- 2월 24일 이잉크에서 대만원정투쟁 진행 시 면담 취소하겠다는 통보

- 2월 24일 5차 원정투쟁 선발대 및 28일 본대 출국 취소

● 2016년 3월

- 3월 4일 지회장외 3명은 하이디스 전인수 대표이사, 정관욱 상무, 대만 이잉크 CFO 로이드첸, 수잔 변호사와 면담.
하이디스 이사회 멤버인 로이드 첸은 앞으로 2주마다 방한하여 하이디스 현안 문제에 대한 교섭을 하기로 합의 함.
- 3월 14일 설비해고자 공장 내 지회사무실 출입 재개
- 3월 18일 지회 조합원 총회(투쟁기금 결의)
- 3월 22일 대만 추방관련 소송 건 증인 참석
(위경복, 대만공항에서 추방)
- 3월 25일 1차 교섭(지회, 하이디스, 대만)
- 3월 31일 정리하고 1년 기자회견(SK하이닉스 정문)

● 2016년 4월

- 4월 1일 시설관리 부당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기각
- 4월 7일 정리하고 1년 결의대회 및 문화제(SK하이닉스 현우문)
- 4월 12일 2차 교섭 (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2명)

● 2016년 5월

- 5월 1일 노동절 대회(시청광장)
- 5월 4일 3차 교섭(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2명)
- 5월 11일 故 배재형 열사 1주기 추모제(마석모란공원)
하이디스 투쟁승리 결의대회
- 5월 20일 해고무효 민사소송 변론 (수원지법 311-2호)
4차 교섭(지회,하이디스 사측, EIH 2명)
- 5월 21일 경기지부 노동시민한마당
- 5월 26일~29일 대만 연대동지 재판 증인 참석을 위해 강제 출국되었던 공지영 조합원 1인 대만 방문
- 5월 31일 실무교섭 (여주 썬밸리 호텔, 노사 각 3인)

● 2016년 6월

- 6월 3일 부당해고 행정소송 변론
- 6월 8일 5차 교섭(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2명)
- 6월 13일 3차 대만 원정 투쟁단 대만 출입금지 관련 대만 현지 법원 공판 진행
- 6월 20일 업무방해 및 주거 침입 관련 공판
- 6월 23일 6차 교섭(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2명)
- 6월 24일 업무방해 관련 공판(지회 임원 및 조직부장)

- 6월 30일 3차 대만 원정 투쟁단 대만 출입금지 관련 대만 현지 법원 선고 공판 연기 → 7월 28일

● 2016년 7월

- 7월 7일 7차 교섭(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2명)
- 7월 8일 부당해고 행정소송 변론
 - 업무방해 관련 공판(지회 임원 및 조직부장)
 - 해고무효 민사소송 변론(1차, 2차 해고자)
- 7월 11일 해고자 기숙사 사용 관련 공판
- 7월 28일 8차 교섭(지회, 하이디스사측, 대만 EIH 1명)
 - 대만 3차원정단 대만 행정 법원 공판

● 2016년 8월

- 8월 9일 시설부문 해고자 15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결과 부당해고에 대해 판정결과 취소 결정
- 8월 10일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건 재판 : 여주지원
- 8월 11일 대만 강제 출국 관련 재판 선고 : 기각
- 8월 16일 청정 중노위 승소 기자회견 : 하이닉스 정문
- 8월 17일 부당이익금(기숙사) 공판 : 여주지원
- 8월 19일 9차 특별교섭 : 서울 trade center 한국 ncp
- 8월 23일 특별교섭 회사 제시안 공문
- 8월 24일 중노위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 10시 국회
- 8월 26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결심 공판 : 지수사조
- 8월 30일 하이디스 이천시민 문화제

● 2016년 9월

- 9월 1일 10차 특별교섭 : 수원라마다호텔 교섭 중지 선언
- 9월 7일 09시 NCP 조정회의 :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 9월 8일 ~ 9일 : 조합원 수련회 - 충북 음성
- 9월 11일 하이디스 단기 알바 모집 공고 - 네이버카페
- 9월 20일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결의 대회 : 국회앞
- 9월 21일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건 재판 : 연기
- 9월 23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선고 공판 : 연기
- 9월 23일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
- 9월 26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지회장 참고인 출석 : 전인수 사장 증인출석
- 9월 28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공문
- 9월 30일 장투사업장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한마당 : 경남 진주 노동당 지역당협

● 2016년 10월

- 10월 5일 부당이익금(기숙사) 공판 선고 : 연기
- 10월 5일 조합비 공제 중단 공문
- 10월 7일 하이디스 투쟁 기금 마련 하루 주점 : 수원
- 10월 7일 하이디스 사측 이천 공장 출입 제한 공문 발송
- 10월 16일 생계투쟁 중인 조합원 간담회 진행
- 10월 17일 하이디스 장비 반출 관련 하이닉스 출입문 선전전 시작
- 10월 21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선고 공판 : 두 번째 연기
- 10월 21일 중노위 판정 이행 촉구! 기계반출 저지! 하이디스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하이닉스 정문
- 10월 25일 단협해지 통보의 건에 대한 회신 공문 사측으로 발송
- 10월 27일 성남지청장 면담 : 하이닉스 정문, 엄미야, 이상목, 지청장, 담당과장
- 10월 28일 사측으로부터 이천 공장 출입제한 등의 건(2) 공문 접수
- 10월 28일 부당해고 행정소송 공판

● 2016년 11월

- 11월 1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시국농성 시작
- 11월 2일 부당이익금(기숙사) 공판 선고
- 11월 3일 사측 공장앞 현수막 철거 (인도 공사 발미)
- 11월 5일 사측 생산장비 공장 외 반출 시작.
- 11월 11일 민사 1심 공판
- 11월 12일 노동자 대회 및 민중 총궐기
- 11월 15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 11월 18일 지회장 동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1심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11월 26일 하이디스 지회 조합원 3명 등 6명 5차 대만 원정단 출국

● 2016년 12월

- 12월 7일 김종훈 국회의원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입국
- 12월 8일 5차 대만원정단 대만 현지 면담
의원 및 노동부 : 김종훈 의원, 대만 鍾孔炤의원, 대만 노동부 왕 호우웨이
노조측 : 함재규 부위원장, 박진태 대의원, 고현석, 오성일 조합원, 리잉(통역)
사용자측 : 로이드 첸 CFO(첸), 수잔 변호사(수), 통역
- 12월 11일 대만 5차 원정단 입국
- 12월 13일 국회 김종훈 의원실에서 노사 특별 교섭 진행

● 2017년 1월

- 1월 13일 민사 1심 결심 공판

- 1월 17일 노란봉투법[손배가압류] 입법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 1월 24일 모욕죄[손해배상] 선고 관련 규탄 기자회견[수원지방법원 앞]

● 2017년 2월

- 2월 10일 민사 1심 선고 연기
- 2월 17일 민사 1심 변론 재개

● 2017년 4월

- 4월 12일 민사 1심 변론 종결 (6/9일 선고 예정)
- 4월 14일~5월 10일 공동투쟁단 고공단식농성 투쟁 전개

● 2017년 5월

- 5월 11일 배재형 열사 추모제

● 2017년 6월

- 6월 7일 여의도 국회 앞 투쟁선포 기자회견
- 6월 7일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국민은행 앞]
- 6월 9일 민사 1심 / 행정 1심 선고 연기[민사-6/16 , 행정-8/11]
- 6월 10일 “프로젝트300”[의원님 직접 만나러 갑니다] 시작
- 6월 16일 민사 1심 선고[해고무효 판결]
- 6월 21일 하이디스 사측 항소
- 6월 26일 SK하이닉스 출근투쟁 진행, 1심판결 관련 하이디스 사측 가집행정지신청
- 6월 26일 김종훈의원실 명의로 주한대만대표부 문제해결 촉구 공문 발송
- 6월 29일 국기위 앞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
- 6월 30일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 접수

● 2017년 7월

- 7월 3일 김종훈의원실 주한대만대표부 공문 접수
- 7월 12일 시설관리 조합원 해고무효 확인 민사 1심 재판
- 7월 17일 이찬열의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발의[지회 의견 전체 반영]
- 7월 18일 주한대만대표부 앞 규탄대회[광화문 동화면세점]
- 7월 25일 하이디스사태로 본 외투자본 문제점과 입법 방향 국회 토론회
- 7월 26일 외교부 앞 집회 및 담당자 면담 진행
- 7월 28일 명예훼손/업무방해/주거침입 관련 항소심 재판

● 2017년 8월

- 8월 10일 하이디스 문제해결 촉구 릴레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24시간 1인 시위
[청와대 분수대 앞]

- 8월 11일 중노위심판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 8월 14일 하이디스 투쟁승리를 위한 청와대 앞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 8월 17일 1차 삼보일배 투쟁[대만대표부 > 청와대 사랑채]
- 8월 23일 1차 3차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이링크]
- 8월 24일 2차 삼보일배 투쟁[대만대표부 > 청와대 사랑채]
- 8월 25일 2차 외교부 담당자 면담[인권사회과]
- 8월 29일 1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8월 30일~31일 청와대 분수대 앞 1박2일 노숙 릴레이 1인 시위
- 8월 31일 2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2017년 9월

- 9월 5일 3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6일 국회의사당 > 청와대 도보 행진
- 9월 7일 4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12일 5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14일 6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15일 손해배상(모욕) 항소심[수원지법]
- 9월 19일 7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20일 하이디스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청와대 사랑채 앞]
- 9월 20일 2차 해고자 해고무효 1심 공판[수원지법]
- 9월 21일 8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9월 22일 출판물 및 업무방해등 선고[서울고등법원] → 피고인[지회] 항소
- 9월 26일 국민의 소리, 현장 노동청 노동부 장관 만남 및 요구안 접수[보신각]
- 9월 26일 9차 노사 교섭 진행[지회,하이디스] → 잠정중단
- 9월 27일 1차 해고자 해고무효 민사 2심 1차 공판[서울 고등법원]

● 2017년 10월

- 10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 농성장 방문 및 면담[여의도 농성장]
- 10월 11일 하이디스지회 임원 선출
- 10월 12일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이찬열 의원 질의, 증인 전인수 대표이사]
- 10월 13일 손해배상(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서울 고등법원]
- 10월 20일 업무방해, 폭처법민사 소송 공판[수원지법]
- 10월 20일 2차 해고자 해고무효 민사 1심 공판[수원지법]
- 10월 23일 하이디스지회 대의원 선출
- 10월 30일 특별교섭 재개 요청(1) 공문 발송[회사 → 지회]

● 2017년 11월

- 11월 2일 청와대 노숙농성 기자회견 및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사랑채 앞]

- 11월 2일 특별교섭 재개 요청(1)에 대한 회신[지회 → 회사]
- 11월 7일 특별교섭 재개 요청(2) 공문 발송[회사 → 지회]
- 11월 9일 특별교섭 재개 요청(2)에 대한 회신[지회 → 회사]
- 11월 15일 1차 해고자 해고무효 민사 2심 2차 공판[서울 고등법원]
- 11월 24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선고
→ 업무방해(고현석,조기준,최지은 : 선고유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이미옥, 윤영준 무죄
- 11월 27일 청와대 농성장 강제철거(종로구청)
- 11월 28일 1차 해고자 민사 2심 1차조정 심의

● 2017년 12월

- 12월 14일 2차 해고자 행정소송 1심 변론
- 12월 15일 1차 해고자 행정소송 2심 변론
- 12월 15일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공판
- 12월 15일 2차 해고자 해고무효 민사 1심 선고 : [연기\[2018.1.26.\]](#)
- 12월 15일 권영천 도의원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천 하이디스 정상화 촉구]
- 12월 19일 1차 해고자 민사 2심 2차 조정심의
- 12월 20일 하이디스 정리해고 투쟁 1000일 문화제
- 12월 27일 하이디스 정리해고 투쟁 1000일 기자회견
- 12월 27일 1차 해고자 민사 2심 3차 조정심의

● 2018년 1월

- 1월 9일 1차 해고자 민사 2심 4차 조정심의(5차 조정 1월 30일)

● 정리해고기간 진행된 소송 사건번호 목록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3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3.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592 해고무효확인
4.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900 해고무효확인
5.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2129 손해배상(모욕) 청구의 소
5-1 수원지방법원 2017나56421 손해배상(모욕) 청구의 소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495 손해배상(기)
7. 대법원 2016도21180 모욕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32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0752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의 소
10. 수원지방법원 2016노854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업무방해
11. 수원지방법원 2016나74354 부당이득금